

다함께돌봄센터 (꿈수레, 덕레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26
----------	------

2025. 9. 8.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8. 28. 광양시장

나. 회부 일자: 2025. 8. 29. 회부

다. 상정 일자: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2025. 9. 8.) 상정,
“원안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

나. 주요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레수시아, 용강광양의봄)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시 설 명	소 재 지	개소일	면 적 (㎡)	종사자 (명)	정원 (명)	비 고
꿈 수 레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33, 711동(B2층)	2018. 11.	159	3	30	기간만료 (2025.12.)
덕 레 수 시 아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43, 105동(B1층)	2020. 10.	127	3	30	기간만료 (2025.12.)
용강광양의봄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양읍 용강로 118, 주민공동센터(1층)	2026. 3. (예정)	97	3	30	신규설치

※ 종사자: 센터장 1, 시간제돌봄교사 2

- 대 상: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초등학생(소득 무관)
- 운영시간: 월~금(주 5일) / 14:00~20:00 (방학중 09:00~18:00)
- 내 용: 방과 후·방학 중 돌봄, 급·간식, 독서·숙제·귀가지도 등
- 이 용 료: 무료

※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10만원 이내에서 수납 가능

《위탁계획》

- 위탁기간
 - 꿈수레, 덕레수시아 다함께돌봄센터: 2026.1.~2030.12. (5년간)
 - 용강광양의봄 다함께돌봄센터: 협약체결일~2030.12. (5년간)
- 위탁내용: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레수시아, 용강광양의봄)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민간수탁자 선정
 - 수탁대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방 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선정
 - 절 차: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공개모집 → 민간위탁적격자 심의회 심사·수탁자 선정 → 계약체결

○ 소요예산(연간 지원 예상액)

구 분	정원 (명)	종사자 (명)	연간 지원 예상액(천원)				비고
			계	인건비	운영비	추 가 운영비	
계	90	9	275,652	225,252	36,000	14,400	
꿈 수 레 다함께돌봄센터	30	3	91,884	75,084	12,000	4,800	국비 130,626
덕 레 수 시 아 다함께돌봄센터	30	3	91,884	75,084	12,000	4,800	도비 42,789
용강광양의봄 다함께돌봄센터	30	3	91,884	75,084	12,000	4,800	시비 102,237

3. 검토 의견

가. 동의안 제출 취지

- 이 동의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위탁하고자 함.
-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함.

나. 주요 내용 검토

1) 민간위탁 근거

-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는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운영이 가능할 것임.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대상(3개소)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초등학생(소득 무관)이며, 운영시간은 월~금(주 5일) / 14:00~20:00 (방학 중 09:00~18:00), 지원 내용은 방과 후·방학 중 돌봄, 급·간식, 독서·숙제·귀가지도 등으로, 이용료는 무료임. 다만,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10만원 이내에서 수납 가능함.

시 설 명	소 재 지	개소일	면 적 (㎡)	종사자 (명)	정원 (명)	비 고
꿈 수 레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양읍 외룡길 33, 711동(B2층)	2018. 11.	159	3	30	기간만료 (2025.12.)
덕 레 수 시 아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43, 105동(B1층)	2020. 10.	127	3	30	기간만료 (2025.12.)
용강광양의봄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양읍 용강로 118, 주민공동센터(1층)	2026. 3. (예정)	97	3	30	신규설치

※ 종사자: 센터장 1, 시간제돌봄교사 2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여부

-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지원, 급·간식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전문성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조직(종사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운영규정 마련, 공적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등의 차원에서 수탁에 필요한 역량(전문성 등)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자격 기준을 갖추고, 법령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인력이므로 시설관리,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2(시설의 평가)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이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시설평가를 진행하며 통과 여부에 따라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에 의무 참여토록 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성과 측정 수단으로 용이함.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이 의무화 되어 있어 회계분야, 아동권리보장·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위탁방법의 투명성·객관성

- 위탁방법: 공모입찰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관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상임.
- 선정방법: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선정
- 선정절차: 위탁기관 공모입찰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수탁기관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기관 공모입찰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사료됨.

다. 검토 결과

- 이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6명)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레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레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시설 현황 및 시설 운영계획

시 설 명	소 재 지	개소일	면 적 (㎡)	종사자 (명)	정원 (명)	비 고
꿈 수 레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양읍 외룡길 33, 711동(B2층)	2018. 11.	159	3	30	기간만료 (' 25.12.)
덕 레 수 시 아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43, 105동(B1층)	2020. 10.	127	3	30	기간만료 (' 25.12.)
용강광양의봄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양읍 용강로 118, 주민공동센터(1층)	2026. 3. 예정	97	3	30	신규설치

※ 종사자: 센터장 1, 시간제돌봄교사 2

- 대 상: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초등학생(소득 무관)
- 운영시간: 월~금(주 5일) / 14:00~20:00 (방학중 09:00~18:00)
- 내 용: 방과 후·방학 중 돌봄, 급·간식, 독서·숙제·귀가지도 등
- 이 용 료: 무료

※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10만원 이내에서 수납 가능

2. 위탁계획

- 위탁내용 (단위: 명, 천원)

구 분	정원	종사자	연간 지원액(예상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추 가 운영비	
계	90	9	275,652	225,252	36,000	14,400	
꿈 수 레 다함께돌봄센터	30	3	91,884	75,084	12,000	4,800	국비 130,626 도비 42,789 시비 102,237
덕 레 수 시 아 다함께돌봄센터	30	3	91,884	75,084	12,000	4,800	
용강광양의봄 다함께돌봄센터	30	3	91,884	75,084	12,000	4,800	

- 위탁기간

- 꿈수레, 덕레수시아 다함께돌봄센터: 2026.1.~2030.12.(5년간)
- 용강광양의봄 다함께돌봄센터: 협약체결일~2030.12.(5년간)

○ 민간수탁자 선정

- 수탁대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선정
- 절차: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공개모집 → 민간위탁적격자 심의회 심사·수탁자 선정 → 계약체결

3.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검토 결과

○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지원, 급·간식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전문성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조직(종사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운영규정 마련, 공적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등의 차원에서 수탁에 필요한 역량(전문성 등)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자격 기준을 갖추고, 법령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인력이므로 시설관리,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이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시설평가를 진행하며 통과 여부에 따라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에 의무 참여토록 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성과 측정 수단으로 용이함.

○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이 의무화되어 있어 회계분야, 아동권리·학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 최종 검토 결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아동복지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앞으로 추진 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사위원회 구성 : 2025. 9.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5. 9. ~ 10.
- 수탁기관 위탁계약 체결 : 2025. 10.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운영 (시 ↔ 시행사) 업무 협약 : 2025. 11. ~ 12.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 2026. 1. ~

5. 광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현황(2025. 8.기준)

위탁시설			수탁법인		위탁기간
연번	센터명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1	덕 레 수 시 아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43, 덕레수시아아파트	(재)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김재경	2022. 4.~ 2025. 12. (4년)
2	꿈 수 레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33, 송보7차아파트			
3	광 영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영로 74, 광영 시민센터 3층	광영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윤선	2023. 9.~ 2028. 12. (5년)
4	와 우 L H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눈소10길 49, 와우NH 1단지	(사)사회문제연구회 사람사랑	문호성	2023. 9~ 2028. 12. (5년)
5	황 금 푸 르 지 오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황금동 519-1, 황금 푸르지오			협약체결일 ~2029. 12. (5년간)
6	황금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황금동 산28, 황금 한라비발디			협약체결일 ~2029. 12. (5년간)
7	성 호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광장로 70, 성호아파트			협약체결일 ~2030. 12. (5년간)
8	산 이 고 운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중동 1815-1, 산이고운	키움사랑 사회적협동조합	하송학	협약체결일 ~2030. 12. (5년간)
9	황 금 더 샵 다함께돌봄센터	광양시 황금1로 66, 황금 더샵			협약체결일 ~2030. 12. (5년간)

6. 위치도

꿈수레(광양읍, 송보7차 아파트)



덕레수시아(광양읍)



용강광양의봄(광양읍)

